시민의 나라를 완성하는 제주시

2025. 1.

# 『2025년도 농업분야』
# 주요 지원사업 안내서

Jeju

제 주 시

〔농 정 과〕

# 목 차


□ 일 반 현 황 ····· 1

□ 2025년 농업분야 비전/목표/전략과제 ····· 3

□ 2025년 1차산업 분야 예산 현황 ····· 4

□ 2025년 주요사업 지원계획 ····· 5

【농정 분야】 ····· 7

○농업성공대학(원) 운영 지원사업 ····· 7

○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····· 8

○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····· 9

○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····· 10

○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····· 11

○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····· 12

○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····· 13

○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····· 14

○농민수당 지원사업 ····· 15

【감귤(과수)분야】 ····· 16

○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····· 16

○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····· 17

○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····· 18
○ 감귤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····· 19
○ 감귤원(하우스, 노지) 관수관비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0
○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1
○ 감귤하우스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2
○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3
○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4
○ 감귤원 원지정비**(우량품종갱신, 성목이식)** 지원사업 ····· 25
○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6
○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 ··· 27
○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28
○ [FTA기금]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····· 29
○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 ··· 30
○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 ····· 31
○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····· 32
○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····· 33
○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····· 34
○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····· 35
○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····· 36

○ FTA기금 고품질키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····· 37
○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 ····· 38
**【식품산업 분야】 ····· 39**
○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····· 39
○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····· 40
○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사업 ····· 41
○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····· 42
○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····· 43
○ 기본형[소농, 면적]공익직불사업 ····· 44
○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[초지] ····· 45
○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····· 46
○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····· 47
**【원예특작 분야】 ····· 48**
○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····· 48
○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 생력화 사업 ····· 49
○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····· 50
○ 친환경·웰빙작물 생산·유통단지 조성사업 ····· 51
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····· 52
○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····· 53

○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····· 54
○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) 지원사업 ··· 55
○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원예현대화) 지원사업 ··· 56
○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에너지절감시설) 지원사업 ··· 57
○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(신재생에너지시설) 지원사업· 58
○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····· 59
○ 친환경비료[폐광어 발효액비 등] 지원사업 ····· 60
○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····· 61
○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····· 62
○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····· 63
○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····· 64
○ 채소·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65
○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····· 66
**【유통 분야】 ····· 67**
○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····· 67
○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····· 68
○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····· 69
○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70
○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····· 71
○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····· 72

○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····· 73
○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····· 74
○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····· 75
○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····· 76

**□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····· 77**

○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변경 ····· 78
○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대상 확대 ····· 79
○ 농민수당 지원사업 대상 확대 ····· 80
○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규 추진 ····· 81
○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면적직불금 단가 상향 ····· 82
○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율, 지급상한 확대 ····· 83
○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변경 ····· 84
○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지원제한 기준 변경 ··· 85
○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침 변경 ····· 86
○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변경 ····· 87

# 일 반 현 황

## 1 기구 및 인원

❍ 기 구(현원) : 39명(4급1, 5급1, 6급9, 7급15, 8급6, 9급4, 공무직 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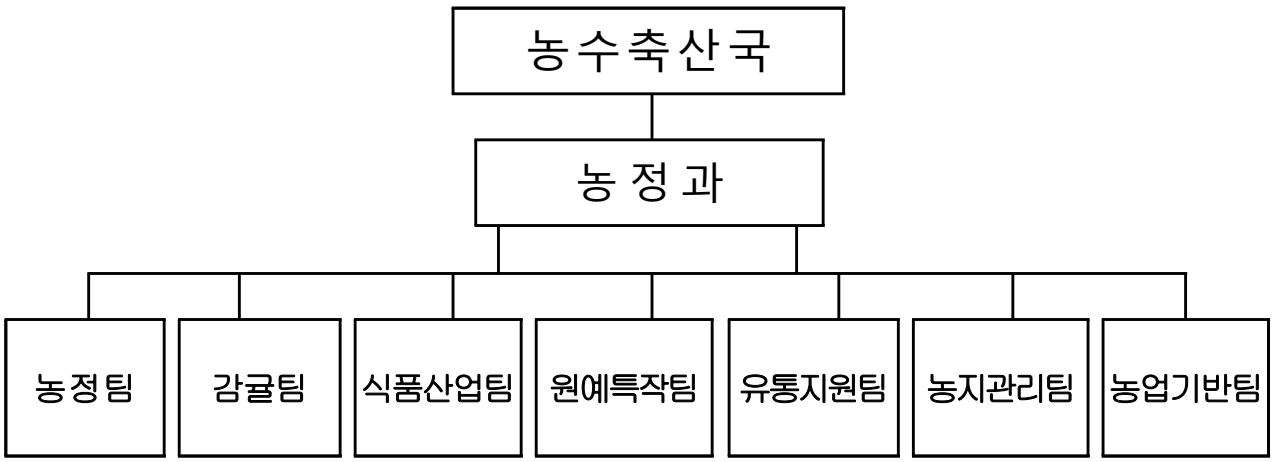


❍ 팀별 주요업무

| 담 당 별 | 주요업무 | 비고 |
|---|---|---|
| 농 정 팀 | ❍ 농림축산식품사업 총괄, 농업인 단체 육성<br>❍ 농어촌진흥기금, 농업인 복지 등 | |
| 감 귤 팀 | ❍ 과수산업 육성 총괄, FTA기금 지원사업 총괄<br>❍ 감귤 유통, 고품질 감귤 생산, 기타과수 지원 등 | |
| 식품산업팀 | ❍ 식품산업, 농촌융복합산업화 및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<br>❍ 직접지불사업(기본형 공익직불, 경관보전, 친환경농업) | |
| 원예특작팀 | ❍ 친환경농업 · 원예특용작물 육성 지원<br>❍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등 | |
| 유통지원팀 | ❍ 농산물 유통 시설 · 장비 지원 등<br>❍ 농업재해,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등 | |
| 농지관리팀 | ❍ 농지관리, 농업법인 사후관리, 농지전용<br>❍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, 농어촌민박 | |
| 농업기반팀 | ❍ 배수개선사업 ·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<br>❍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등 | |

## 2 일반농업 현황

### □ 농업 세력 ('23년)

- ❍ 농업조수입 : 8,699억원 ※ 도 전체 2조 2,585억원의 38.5%
- ❍ 농 업 인 구 : 17,170호·43,244명 ※ 도 전체(72,985명)의 59.3%
- ❍ 경 지 면 적 : 27,297ha(밭 27,547) ※ 도 경지면적(55,605ha)의 49.1%
- ❍ 농기계보유 : 8종·17,715대(경운기 7,388, 관리기 5,989, 기타 4,338)

### □ 과수분야 ('23)

- ❍ 감 귤 : 11,551농가·6,566ha(노지 5,039, 가온 76, 월동 287, 만감류 1,164)
- ❍ 기타과수 : 2,235농가·537ha(참다래 196, 단감 86, 매실 88, 블루베리 61 기타 106)
- ❍ 감귤선과장 : 95개소(농협 24, 감협 19, 유통인 32, 영농법인 20)

### □ 밭작물분야 ('23년)

- ❍ 식량작물 : 8,034농가·9,191ha(콩 3,597, 보리 1,855, 기장 953, 감자 794, 메밀 1,529 기타 463)
- ❍ 월동채소('23년) : 8,397농가·7,172ha(양배추 1,185, 월동무 1,543, 당근 1,121 브로콜리 991, 기타 2,332)
- ❍ 원예전문생산단지 : 5개소(화훼 2, 과채 2, 과수 1)
- ❍ 친환경농업지구 : 23개소(한림 2, 애월 7, 구좌 5, 조천 4, 한경 2, 동지역 3)
  - 친환경인증 : 744호·1,046ha(유기 307호·457ha, 무농약 437호·589ha)
  - GAP인증 : 1,974호·1,793ha

### □ 유통시설 ('23년)

- 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: 20개소(농협 17, 영농법인 3)
- ❍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 : 22개소(농협 3, 대형매장 3, 초록마을 8, 생협 4, 기타 4)

# 2025년 농수축산국 비전 / 목표 / 전략과제

**비전**


**목표** 1차산업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농어업·농어촌 경쟁력 강화

| 전 략 과 제 | 실 행 계 획 |
|---|---|
| [1] 시장 경쟁력을 갖춘 탄탄한 농업 기반 조성 | 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<br>② 지속 성장 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<br>③ 1차 산업 기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-소비체계 구축<br>④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위주 특화작물 육성<br>⑤ 농업고용 인력 및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<br>⑥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생산 기반 강화로 농가 소득 안정화<br>⑦ 농지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·이용 정립<br>⑧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및 균형 발전 도모 |
| [2]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살기 좋은 어촌 조성 | 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 소득 안전망 구축<br>② 안심·안전조업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<br>③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구축<br>④ 어항 재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<br>⑤ 사계절 내내 즐기는 BEST 해양치유 관광지 육성<br>⑥ 살맛 나는 어촌·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 추진 |
| [3]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프리미엄 축산업 육성 | ① 친환경 및 스마트 축산 기반조성으로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<br>② 선제적 현장 방역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<br>③ 시민의식 함양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사회 조성<br>④ 제주산 축산물 소비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위생관리 강화<br>⑤ 탄소중립형 가축분뇨처리 인프라구축 및 청정 축산환경 조성<br>⑥ 우호협력도시(제주시↔렉싱턴)간 상생할 수 있는 말산업 조성<br>⑦ 기후변화에도 안정된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도모 |

# 2025년 1차산업 분야 예산 현황

## 1 예산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| 부서별 | 2025년도 본예산액(A) | 전체예산 대비(%) | 2024년도 본예산액(B) | 전체예산 대비(%) | 증감액 (A-B) | 증감률 (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계** | **196,998** | **100** | **196,554** | **100** | **444** | **0.2** |
| 농 정 과 | 112,027 | 56.8 | 114,409 | 58.3 | △2,382 | △2 |
| 해 양 수 산 과 | 51,774 | 26.2 | 53,188 | 27.1 | 1,414 | 2.7 |
| 축 산 과 | 33,197 | 16.8 | 28,957 | 14.7 | 4,240 | 14.6 |

### ▢ 재원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재원별 |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계 | 농정과 | 해양수산과 | 축산과 |
| **계** | **196,998** | **112,027** | **51,774** | **33,197** |
| 국 비 | **22,668** | 14,154 | 5,836 | 2,678 |
| 균 형 발 전 | **10,051** | 644 | 9,407 | - |
| 기 금 | **45,626** | 33,847 | 5,665 | 6,114 |
| 도 비 | **26,417** | 11,939 | 6,003 | 8,475 |
| 자 체 재 원 | **92,236** | 51,443 | 24,863 | 15,930 |

# 2025년 주요사업 지원계획

**< 일 러 두 기>**

- 본 책자는 제주시가 202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진 예정인 농업분야 주요 사업 지원계획으로서 농업인,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를 위해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을 확인 바랍니다.

**※ 유 의 사 항**

본 책자의 사업별 지원 내용은 향후 중앙부처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업 지침 변경 또는 제주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(추진일정·지원대상·지원단가·지원예산 등)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 [ 농정분야 ]

## 1 농업성공대학(원) 운영 지원사업

❖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춰 능동적인 선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교육 권리향상 및 전문역량 강화

#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·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운영기간 : 2025. 4월 ~ 11월

❍ 교육인원 : 500명(농협별 50명 내외 × 10개 농협)

❍ 사 업 비 : 143백만원(도비 100 , 자부담 43)

❍ 운영주체(안) : 제주시,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

❍ 교육장소(안) : 지역농협(농협 회의실 등 활용)

❍ 교육운영 : 연간 25주(총 50시간) - 매주 1회(2시간)

- 교육내용 : 농업경영, 농업 마케팅, 농업 기술교육 등
- 강사선정 : 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선도 농업인 등

※ 지역농협 사정에 따라 시간 배정은 달라질 수 있음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수강 신청기간 : 2025. 4월 ~ 5월 **※ 신청기간 별도 공지(신문, 언론 등)**

❍ 신청 접수장소 : 지역농협

- 지역농협에 비치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2, 3311)<br>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(☎ 741-6622) 및 각 지역농협 |
|---|---|

## 2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

❖ 여성 농업인의 출산(예정)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### □ 지원근거

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(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)
❍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(사업지원 등)

#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5명
❍ 사 업 비 : 30백만원(자체재원 30)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90일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(예정)한 전업 여성농업인
❍ 지원내용 :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이용 금액의 100% 지원
- 지원일수 : 출산 전 90일, 출산 후 120일(총 210일) 기간 중 70일 범위 내
❍ 이용범위 :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함
❍ 지원기준
- 1일 지원액 : 80,240원 ☞ 지원기준단가 80,240원의 100%
- 1인 최고 한도액 : 5,616,800원 ☞ 80,240원×70일(최대 이용일수)

※ 지원기준(지원액, 지원기준단가) 등은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
※ 1일 작업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일 이용액 전액,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 계산 지원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연중(수시)
❍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신청서, 농업경영체,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 |
|---|---|

# 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

❖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위해 고충상담,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,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(여성농업인의 육성)

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(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・운영)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5개소 (한림・애월・김녕・함덕・한경)

❍ 사 업 비 : 499백만원(자체재원 499)

❍ 지원기준 : 개소당 1억원 이내

❍ 사업내용 : 고충상담, 노인・아동 프로그램운영, 특화프로그램 및 교육・문화프로그램 등

※ 해당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・복지・교육 프로그램 참여가능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프로그램 수강 신청기간 : 연중(수시)

❍ 신청접수장소 : 여성농어업인센터 **※ 센터별 프로그램 상이**

| 구 분 | 한림센터 | 애월센터 | 김녕센터 | 함덕센터 | 한경센터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 소 | 한림북동길 7<br>한림중앙상가 205호 | 일주서로 6266 | 김녕로 7길 14 | 함덕18길 29 | 신한로 81 |
| 연락처 | 070-8801-6122 | 799-1235 | 783-5031 | 784-6988 | 773-1554 |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 |
|---|---|

# 4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

❖ 장애·질병 등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공제상품명 : 2025 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

❍ 사 업 비 : 2,020백만원(국비 1,010, 도비 505, 자부담 505)

※ **국비[국가직접지원사업] 50%**, 도비 25%, 자부담 25%

※ 공제료는 NH농협생명 제주총국을 통해 일괄 지원 및 정산

❍ 지원대상 : 공제 가입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(일부상품 84세)

**보험료 할인·할증**

(주계약 보험료 5%, 중복할인 미적용)

①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

②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

③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

④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수료한 경우(가입일 기준 2년 이내)

❍ 가입기간 : 가입일로부터 1년간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2월 ~ 12월

❍ 신청장소 : 거주지 지역농협

❍ 보험가입 절차 : 보험가입신청 → 청약서 작성 → 보험료 납부 → 보험증권 발급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3, 3311) |
|---|---|

#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

❖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·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

## □ 설치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3항

❍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융자규모 : 5,000억원(상반기 2,750, 하반기 2,250) ※ 2024년 기준

❍ 지원대상 : 제주도 내에서 농·임·축·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

❍ 융자 한도액 [농어가 :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/생산자 단체 :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]

❍ 융자기간 및 상환 : (운전자금)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
(시설자금)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(10회)

❍ 융자금의 이율 : 0.7% (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)

**<제외대상>**

☞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 사업을 받고 있는 자

☞ 본인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(교직원 포함)이거나 농(축)·수·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

☞ 기타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(전년도 기준) 이상인 자 등

**※ 지원기준은 2025년 사업 시행지침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**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연 2회 (상반기 1~3월 예정, 하반기 7~8월 예정)

❍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❍ 융자취급 금융기관 : 농(축)·수협, 제주은행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신협

❍ 신 청 자 :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2, 3311) |
|---|---|

# 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

❖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·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

## ▢ 지원근거

❍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신청기간 : 2024. 12. 18. ~ 2025. 2. 5.

❍ 신청자격

- **(연령)**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이상 만 50세 미만
  ※ '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: 1975.1.1. ~ 2007.12.31. 출생자
- **(영농경력)**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
- **(교육실적)**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- **(병역)** 미필자 가능, 단) 후계농 자금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

❍ 지원내용 : 농지구입 및 임차, 시설 설치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, 기타자금(홈페이지 개발, 농기계 구입비 등)

⇒ 사업 대상자 선정 후 5년 이내 사업 추진시 최대 5억원까지 융자지원(상환 :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, 금리 : 고정1.5%)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2. 18. ~ 2025. 2. 5.

❍ 신청장소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.go.kr) 온라인 신청

❍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건강자격득실확인서,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 |
|---|---|

# 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
❖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시스템 개선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

## ▢ 지원근거

❍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❍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신청기간 : 2024. 12. 18. ~ 2025. 2. 5.

❍ 신청자격

-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인 자

※ '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85.1.1. ~ 2007.12.31 출생자

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독립 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의 농업인

- 사업 신청을 하는 읍·면·동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하는 자

❍ 지원기간 및 내용

| 구분 | 지원 1년차 (2025.4 ~ 2026.3) | 지원 2년차 (2026.4 ~ 2027.3) | 지원 3년차 (2027.4 ~ 2028.3)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독립경영 1년차 | 110만원(12개월) | 100만원(12개월) | 90만원(12개월) | 3,600(36) |
| 독립경영 2년차 | 100만원(12개월) | 900만원(12개월) | - | 2,280(24) |
| 독립경영 3년차 | 90만원(12개월) | - | - | 1,080(12) |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2. 18. ~ 2025. 2. 5.

❍ 신청장소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.go.kr) 온라인 신청

❍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,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병역관련증명서,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, 금융기관 신용조사서,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 |
|---|---|

# 8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

❖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

## □ 지원근거

❍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10조 및 제11조

❍ 「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」 제10조 및 제11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0,000명 (도전체)

❍ 사 업 비 : 4,000백만원 (도전체)

❍ 지원기준 : 1인당 200천원

❍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(주민등록 필수)하면서 주소를 두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 시행연도(2025.1.1.) 기준 만 20세 이상~ 만 80세 미만인 자

〈제외대상〉

☞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(단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)

☞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
☞ 최근 2년 내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
☞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시 지급대상)

☞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

❍ 지원내용 : 문화·예술 스포츠 활동 등 45개 문화·복지 분야에 사용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월 ~ 3월 예정 (※ 별도공고)

❍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❍ 카드발급 절차 : 사업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카드발급 안내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6) |
|---|---|

# 9 농민수당 지원사업

❖ 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

## □ 지원근거

❍ 지원근거 :「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45,000명 (도전체)
❍ 사 업 비 : 18,000백만원 (도전체)
❍ 지 급 액 : 1인당 400천원 (지역화폐/탐나는전)
❍ 지급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이상 계속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, 2년이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전업 농민

**<제외대상>**
☞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(단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, **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** 지원대상에 포함)
☞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☞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☞ 최근 2년 내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☞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시 지급대상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년 1월 ~ 3월 예정 (※ 별도공고)
❍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종합소득금액증명원, 경작사실 확인서, 농민수당 지급동의서 (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) 등

**※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는 2025년 사업 시행지침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6) |
|---|---|

# [ 감귤(과수) 분야 ]

## 1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

❖ FTA체결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의 연중 생산을 위하여 노지 재배 위주의 생산체계를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에 대응한 감귤 산업 기반 구축

### ▢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5.0ha
❍ 사 업 비 : 2,623백만원(기금 524, 도비 787, 융·자담 1,312)
❍ 지원대상 :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
※ 자동개폐기 포함 지원, 빗물이용시설(물탱크) 설치 의무화
❍ 지원단가
- 비가림하우스 : 98,541천원/0.2ha
- 감리비 : 1,733천원/0.2ha,
- 빗물이용시설 : 31,626천원/개소 *100톤 기준
- 개폐기 : 200천원/대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2ha(2,000㎡) 범위 내 지원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# 2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

❖ 정전 시 환풍기, 난방기 등 시설·장비의 안정적 가동으로 시설재배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생산 여건 조성

#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비상발전기 40대

❍ 사 업 비 : 463백만원(기금 93, 도비 139, 융·자담 231)

❍ 지원대상 : 비상발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 : (20kw) 10,500천원, (30kw) 11,600천원

* 비상발전기 30kw 신청 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 가능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 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3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

❖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따른 하우스 창을 여닫는 불편 해소 및 자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업재해 위험 감소와 농가의 안전한 영농 생산 여건 조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3.0ha

❍ 사 업 비 : 438백만원(기금 88, 도비 131, 융·자담 219)

❍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 : 1ha당 18,400천원(92대 기준) ☞ 대당 200천원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1ha(92대)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4 감귤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

❖ 노후화된 감귤 하우스의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영농경비 부담 완화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3.0ha

❍ 사 업 비 : 2,326백만원(기금 465, 도비 698, 융·자담, 1,163)

❍ 지원대상 :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된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

* 본인 소유 토지만 신청 가능

* 농업경영체 상 시설하우스 면적 6,600㎡ 이하 농가 우선 추진

* 방치 및 농수산식 하우스는 지원 제외

❍ 지원단가 : 47,188천원/0.5ha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5 감귤원(하우스, 노지) 관수관비시설 지원사업

❖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인위적 수분 조절 및 농약 살포 등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

## ▢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15ha
❍ 사 업 비 : 319백만원(기금 64, 도비 96, 융·자담 159)
❍ 지원대상 : 감귤원(하우스, 노지)내 관수시설을 희망하는 농가
❍ 지원단가(0.5ha)
- 감귤하우스 스프링클러 : 수동 9,953천원, 자동 13,047천원
- 감귤하우스 점적관수 : 수동 5,389천원, 자동 8,448천원
- 감귤하우스 승강형 스프링클러 : 29,620천원
- 감귤하우스 관비시설 : 자동 6,909천원
- 감귤하우스 관수관비시설 : 자동 12,040천원
-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: 수동 6,710천원, 자동 9,318천원
- 노지감귤원 점적관수 : 수동 5,389천원, 자동 8,448천원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❍ 지원한도
- (노 지) : 농가당 2ha(단,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1ha)
- (하우스) : 농가당 1ha(단,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0.5ha)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6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

❖ 방풍망 설치로 강풍과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투광율 향상 및 작업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생산기반 조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2ha

❍ 사 업 비 : 347백만원(기금 69, 도비 104, 융·자담 174)

❍ 지원대상 : 노지감귤원에 방풍망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 : 13,958천원/0.5ha(2500m기준) ☞ m당 55,832원

※ 원지정비사업 신청농가 및 사업완료('20 ~ '24년)에 한하여 500m(0.5ha) 기준으로 지원 가능(중간 구간 설치 가능)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총 사업량이 60m이상인 경우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7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

❖ 고령화된 농촌의 작업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영농 환경 개선으로 감귤농가 소득증대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1ha

❍ 사 업 비 : 140백만원(기금 28, 도비 42, 융·자담 70)

❍ 지원대상 : 감귤원에 농산물운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 : 사업장 1개소당 운반기 1대 지원

- (동 력) 5,892천원/0.5ha (운반기 3,800, 레일 2,092)
- (무동력) 4,658천원/0.5ha (운반기 711, 레일 3,946)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노지감귤원은 2ha, 시설하우스는 1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8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

❖ 하우스 내 자동화된 병해충 방제시설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 방제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감귤농가 영농환경 개선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8ha

❍ 사 업 비 : 1,745백만원(기금 349, 도비 524, 융·자담 872)

❍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

- 무인방제시설(일반) : 54,200천원/ha

※ 시공업체별 시공방법 다양하여 지원단가 한도내에 시공업체의 견적가격에 따라 농가가 선택하여 사업 추진

- 무인방제시설(이동식) : 16,680천원/ha
- 감리비(총사업비 50백만원 이상) : 1,544천원/ha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1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9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

❖ 여름철 일시적 기온상승에 따른 고온 및 재해발생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하우스 내 작물 생육환경 개선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30ha

❍ 사 업 비 : 709백만원(기금 142 도비 212 융·자담 355)

❍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환풍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 : 0.5ha당 10,270천원(13대 기준) ☞ 대당 790천원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(13대)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10 감귤원 원지정비(우량품종갱신, 성목이식) 지원사업

❖ 노지감귤 관행 재배로는 품질(당도) 향상에 한계가 있어, 기존 관행 재배 과원을 고당도 감귤 생산이 가능한 과원으로 조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33ha

❍ 사 업 비 : 3,634백만원(기금 727, 도비 1,817, 융·자담 1,090)

❍ 지원대상 : 감귤원의 원지정비(우량품종갱신, 성목이식)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

- 우량품종갱신사업 : 90,006천원/ha
- 성목이식사업 : 78,182천원/ha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50%, 융자 20% 자부담 1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노지감귤원은 제한없음, 시설하우스는 1ha 범위 내 지원
(노지, 시설 모두 최소 1,000㎡이상 지원)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4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11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

❖ 하우스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작물 생육환경 개선 및 냉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조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3ha

❍ 사 업 비 : 683백만원(기금 137, 도비 205, 융·자담 341)

❍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송풍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

- 송풍팬 : 12,920천원/0.5ha(130W 38대, 50~60W 76대)
- 공기교반기 : 13,680천원/0.5ha(130W 38대, 50~60W 76대)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12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

❖ 겨울철 일시적 기온 하강에 따른 감귤 동해 및 냉해 등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45대

❍ 사 업 비 : 481백만원(기금 96, 도비 144, 융·자담 241)

❍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에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 : (20만kcal) 8,000천원, (25만kcal) 9,000천원, (30만kcal) 10,000천원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 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13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시설 지원사업

❖ 겨울철 일시적 기온 하강에 따른 냉해·동해 재해 발생 사전 예방으로 하우스 시설 내 작물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0.0ha

❍ 사 업 비 : 1,265백만원(기금 253, 도비 379, 융·자담 633)

❍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보온커튼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❍ 지원단가

- 보온커튼 : 55,000천원/0.5ha
- 감 리 비 : 1,567천원/0.5ha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5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14 (FTA기금)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

❖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역별·품목별 맞춤형 사업으로 ICT 융복합 시설과 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첨단 농업 기반 구축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5.0ha

❍ 사 업 비 : 115백만원(기금 23, 도비 34, 융·자담 58)

❍ 지원대상 :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감귤 재배 농가

* 하우스 시설 장비 등 완비한 경영체

❍ 지원단가 : 20,000천원/0.5ha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4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4. 1월 중) 변경될 수 있음

❍ 지원내용 :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(필수)+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(선택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8. ~ 11. 11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| |
|---|---|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<br>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<br>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 지점 |

# 15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

❖ 생산성이 낮은 고령목, 당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원 등을 원지정비 (품종갱신 및 성목이식) 추진 시 농가소득 부재에 따른 생산비 보전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36ha

❍ 사 업 비 : 250백만원(자체재원 250)

❍ 지원대상 : FTA기금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완료 농가

- 성목이식 필지 2년, 품종갱신 필지 3년 지원

❍ 지원내용 : 원지정비(성목이식 및 품종갱신) 참여 필지 생산비 보전

❍ 지원단가 : 7,000천원/ha (㎡당 700원)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월~ 11월 (*대상농가에 안내문 발송예정)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(농지소재지 읍면동)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4, 3331) |
|---|---|

# 16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

❖ 감귤원에 식재한 방풍수가 높게 자라 경관을 해치고 햇빛투과 감소, 양분경합 등으로 인근 감귤원 피해 발생에 따라 정비를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5,886본

❍ 사 업 비 : 556백만원(도비 500, 자부담 56)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

❍ 지원단가 : 밑둥절단 23,000원/본, (선택사항)파쇄작업 12,000원/그루

❍ 지원내용 : 방풍수 밑둥 제거 및 절단목 정리 지원

❍ 지원비율 : 도비 90%, 자부담 10%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2. 27. ~ 2025. 1. 10.(예정)

❍ 신청장소 : 토지(과원)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방풍수 정비동의서(임차일 경우), 지방세 완납 증명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 |
|---|---|

# 17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

❖ 노지 한라봉 산 함량 및 당도의 균일성을 증진하고 동해 피해 및 병충해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26상자(상자당 2,000매)

❍ 사 업 비 : 16.7백만원(도비 10, 자부담 6.7)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상 노지한라봉 재배면적이 330㎡이상인 농가

❍ 지원단가 : 132천원/상자

❍ 지원비율 : 자체재원 60%, 자부담 40%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토지(과원)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종합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 완납증명서, 견적서, 기타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 |
|---|---|

# 18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

❖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조수입 증대 및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7.4ha

❍ 사 업 비 : 833백만원(도비 500, 자부담 333)

❍ 지원대상 : 원지정비 사업, 1/2간벌 과원,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노지 온주감귤 감귤원 경영 농가

**※ 원지정비 지원사업 참여 과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일반농가 대상 토양피복에 적합한 과원 지원**

❍ 지원내용 및 단가

<일반농가>

- 타이벡: 30,312천원/ha(토양피복 19,472 점적관수시설 10,840)
- 하이브릭스, 트러스: 25,020천원/ha(토양피복 14,180 점적관수시설 10,840)

<원지정비농가>

- 타이벡: 35,472천원/ha(토양피복 22,112 점적관수시설 13,360)
- 하이브릭스, 트러스: 29,004천원/ha(토양피복 15,644 점적관수시설 13,360)
- 우산식지주대: 10,240천원/0.5ha **※ 성목이식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**

❍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1ha까지 지원(원지정비 실시한 필지는 제한없음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2. 27 ~ 2025. 1. 10.(예정)

❍ 신청장소 : 토지(과원)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종합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 |
|---|---|

# 19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

❖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및 가격안정 도모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00,000매

❍ 사 업 비 : 200백만원(도비 100, 자부담 100)

❍ 지원대상 :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(총 출자금 1억원 이상)

❍ 지원비율 : 자체재원 50%, 자부담 50%

- 지원한도 : 1,000원/상자당 *보조금 기준

- 지원자재 : 골판지 및 플라스틱 감귤상자(3kg이하 소포장상자 제외)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

❍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견적서, 포장상자 도안(안), 출자금 확인서류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 |
|---|---|

# 20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

❖ 만감류(한라봉, 천혜향)의 완숙 시기 이후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유도하여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참여농가의 가격 불확실성, 감모, 기상적 여건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장려금 지급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. ~ 12월

❍ 사 업 량 : 700톤

❍ 사 업 비 : 350백만원

❍ 지원대상 :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(레드향, 한라봉, 천혜향, 황금향, 카라향)를 지역 농,감협으로 계통출하* 하는 농가 (군납, 수출 포함) * 수탁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

- 품종별 지원대상 품질기준

| 구 분 | 당 도 | 산 도(%) | 무 게(g) | 출하시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한라봉 | 13 ° Bx 이상 | 1.1 이하 | 250 | '24. 01. 01. ~ '24. 12. 15. |
| 천혜향 | 13 ° Bx 이상 | 1.1 이하 | 200 | |
| 레드향 | 14 ° Bx 이상 | 1.1 이하 | 200 | |
| 카라향 | 14 ° Bx 이상 | 1.1 이하 | 130 | |
| 황금향 | 12 ° Bx 이상 | 1.0 이하 | 200 | |

❍ 지원한도 : 3kg/㎡, 농가당 7,000kg이내 (※ 합격물량기준)

- **(광센서 선별기) 300원/kg 이내**

❍ 지원비율 : 자체재원 100% (정액지원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월 초

❍ 신청장소 : 각 지역 농·감협 유통센터, APC등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감귤의무자조금 완납증명서, 통장사본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 |
|---|---|

# 21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

❖ 감귤이외 기타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재해예방용 시설 지원으로 감귤 대체 작물 육성 및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~12월

❍ 사 업 량 : 자동개폐기 등 13개사업

❍ 사 업 비 : 417백만원(도비 250, 자부담 167)

❍ 지원내용 : 13개사업(비상발전기, 자동개폐기, 관수시설, 농산물운반시설, 무인방제시설, 환풍기, 송풍팬, 난방기, 보온커튼, 제습기, 재난방지시스템, SS기, 키위 인공수분기)

※ 제습기 시설, 재난방지시스템 시설 외 세부사업별 지원 기종 및 단가, 시공업체 자격 기준 등은 「2025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」추진계획에 준함

❍ 지원대상 : 기타과수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

❍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 ~ 1. 17

❍ 신청장소 : 과원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 |
|---|---|

# 22 FTA기금 고품질키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

❖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키위의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비가림하우스 등 12개사업

❍ 사 업 비 : 2,412백만원(기금 482 도비 724, 자부담 1,206)

❍ 지원내용 : 12개사업[비가림하우스(빗물이용시설포함), 비상발전기, 자동개폐기, 관수관비시설, 농산물운반시설, 무인방제시설, 환풍기시설, 송풍팬시설, 보온커튼, 재해예방용난방기, 노후하우스개보수,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]

❍ 지원대상 : 키위 재배 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

❍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1. 4. ~ 11. 18.(신청마감)

※ 2026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5. 10월 예정

❍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한라골드영농법인

❍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간벌원지정비사업 실적 확인서, 식재년도확인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 |
|---|---|

# 23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

❖ 인공수정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기형과 발생률 감소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~12월

❍ 사 업 량 : 943통

❍ 사 업 비 : 66백만원(도비 40, 자부담 26)

❍ 지원내용 :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

❍ 지원대상 : 기타과수 및 과채류 시설재배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

❍ 지원단가 : 통당 70천원 이하

※ 1통당 70~80마리 수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수정벌이고, 수정 횟수는 평균 월 1회로 재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❍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과원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견적서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2, 3331) |
|---|---|

# [ 식품산업 분야 ]

## 1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

❖ 온·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제주 농산물·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유통 판로 개척

#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2개소 내외 * 신청상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❍ 사 업 비 : 333백만원 (보조 300, 자부담 33)

- 개소당 사업비 : 15백만 원(보조 13.5, 자부담 1.5) 이내

❍ 지원비율 : 보조 90%, 자부담 10%

❍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농산물 가공업체, 농촌융복합산업 (예비)인증 사업자

❍ 지원내용 : 제주산 농산물 및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비 지원

❍ 지원자격 :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 및 이를 직접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자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및 우편 접수

❍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2, 3321) |
|---|---|

## 2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 사업

❖ 농산물 가공식품의 포장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포장재비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

#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8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5개소 내외 * 신청상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❍ 사 업 비 : 56백만원 (보조 50, 자부담 6)

- 개소당 사업비 : 11백만 원(보조 10, 자부담 1) 이내

❍ 지원비율 : 보조 90%, 자부담 10%

❍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농촌융복합산업 (예비) 인증 사업자

❍ 지원내용 : 제주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·변경,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비용 지원

❍ 지원자격 : 제주시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자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및 우편 접수

❍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2, 3321) |
|---|---|

#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사업

❖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으로 농업·농촌의 발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3개소 내외

❍ 사 업 비 : 500백만원 (보조 300, 자부담 200)

- 개소당 사업비 : 166.7백만 원(보조 100, 자부담 66.7) 이내

❍ 지원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대상 :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

❍ 지원내용 : 제주산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(체험)시설 구축 또는 기계·장비 구입비 지원

❍ 지원자격 :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, 3차 산업간 융·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및 우편 접수

❍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2, 3321) |
|---|---|

# 4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

❖ 지역농산물 가공 기계·장비 지원으로 상품 출하시기 조절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와 농업소득 안정화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·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0개소 내외

❍ 사 업 비 : 167백만원 (보조 100, 자부담 67)

- 개소당 사업비 : 16.7백만원(보조 10, 자부담 6.7) 이내

❍ 지원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, 협동조합

❍ 지원내용 : 건조기, 슬라이스기, 분쇄기, 포장 실린더 등 제주산 농산물 가공 기계 · 장비 구입비 지원

❍ 지원자격 : 제주시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두고 활동 또는 예정인 자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방문 및 우편 접수

❍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2, 3321) |
|---|---|

# 5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(신규사업)

❖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지원
❖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 확대

## □ 지원근거

❍ 『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 제7조, 제23조2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,312가구

❍ 사 업 비 : 1,060백만원(국비 530, 도비 530)

❍ 지원대상 :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아동 포함 가구

❍ 지원내용 : 취약계층의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지원 성격의 '농식품 바우처'를 월 단위(10개월)로 지원

❍ 지원품목 :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 등

❍ 사 용 처 : 농협하나로마트, GS25, CU, 농협몰[온라인]등 가맹점

❍ 지원금액 : 월 4만 원 / 1인 가구, 월 10만 원 / 4인 가구

※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

| 구분(가구)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9인 | 10인↑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금액(천원) | 40 | 65 | 83 | 100 | 116 | 131 | 145 | 159 | 173 | 187 |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농식품부 → 시→ 읍·면·동) : 2025. 1월

❍ (신청·접수)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, 전화(ARS) 통해 신청 (※ 별도공고)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2, 3321) |
|---|---|

# 6 기본형(소농, 면적) 공익직불사업

❖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3,608ha

❍ 사 업 비 : 25,850백만원(국비* 100%) *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

❍ 지원대상 :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❍ 지급대상 :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*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

* (밭직불) '12~'14년 밭농업 (조건불리직불) '03~'05년 조건불리지역 (쌀직불)'98~'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

-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

❍ 지원단가

- <소농*직불금> 농가당 130만원 지급

*농지 0.5ha이하,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이상 등 8가지 조건 충족 필요

- <면적직불금> 면적별 역진단가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·동) : 2025. 1월

❍ 농가 사업신청 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 : 2025. 2월 ~ 4월 예정 (※ 별도공고)

* 비대면 신청접수 : 2월, 방문 신청접수 3월 ~ 4월

❍ 이행사항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및 지급요건 검증(지자체) : 2025. 5월 ~ 10월

❍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2025.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3, 3321) |
|---|---|

# 7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(초지)

❖ 읍면지역의 초지에 사료작물 및 목초를 재배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으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및 유지

## ▢ 지원근거

❍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,178ha

❍ 사 업 비 : 530백만원(국비* 424, 도비 106) *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된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'03~'05년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, 조건불리지역(읍면)에 있는 초지

※ 제외대상 :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

❍ 지급대상 : 직전연도 사전 수요조사 사업지구 선정된 16개 마을 신청필지

❍ 지원단가 : 준경관초지 450천원/ha(국비 80%, 지방비20%)

## ▢ 2026년 사업대상지구 신청 방법 및 절차

❍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) : 2025. 4월

❍ 사업신청 접수(마을 → 읍·면) : 2025. 4월 ~ 5월

❍ 사업면적 배정 및 대상지구 선정(농식품부 → 시) : 2025. 7월

## ▢ 2025년 사업지구 이행점검 및 지급절차

❍ 이행사항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: (동계) 2025. 5월 (하계) 2025. 10월

❍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(동계) 2025. 8월 (하계) 2025.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3, 3321) |
|---|---|

# 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

❖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, 토양생태·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386ha

❍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국비* 100%) *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

※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해 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도 신청가능

❍ 지급대상 : 친환경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

- 지급기한 : 유기 5년(무농약 3+유기2), 무농약 3년/ 유기지속

- 지급한도 : 농가당 최소 0.1ha 이상 최고 5ha 이하('24.12월현재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·동) : 2025. 1월

❍ 농가 사업신청 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 : 2025. 3월 ~ 4월 예정 (※ 별도 공고)

❍ 친환경 이행사항 점검(친환경인증기관) : 2025. 5월 ~ 11월

❍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2025.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3, 3321) |
|---|---|

# 9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

❖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선편이 과일 간식 등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및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와 저변 확대

## □ 지원근거

❍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6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」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67개 초등학교

❍ 사 업 비 : 180백만원(자체재원 100%)

❍ 지원내용 : 컵과일형태의 신선편이 과일 또는 과일·과채류 가공품

❍ 지원대상 : 초등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등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(도) : 2025. 1월 ~ 2월

❍ 공급업체 공모 선정(도) : 2025. 2월 ~ 3월

❍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수요조사(교육지원청) : 2025. 3월

❍ 공급업체 계약체결 : 2025. 3월

❍ 과일간식 등 공급 : 2025. 7월 ~ 11월(연 15회)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 (☎ 728-3323, 3321) |
|---|---|

# [ 원예특작 분야 ]

## 1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

❖ 친환경농업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력증진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
❖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

### □ 지원근거

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360ha
❍ 사 업 비 : 541백만원(국비 108, 도비 162, 자부담 271)
- 지원조건 : 국비 20%, 도비 30%, 자부담 50%

❍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
- 녹비종자(ha당) 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리스 50kg(인삼 재배농가에 한함)
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(ha당) : 유기 200만원, 무농약 150만원, 일반 100만원

❍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선정 우선순위 : 유기인증 농지 〉 무농약인증 농지 〉 일반 농지

❍ 지원내용
- 녹비작물종자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 등
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고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
- 천적(농업용 재배시설에 한함) : 갈색반날개, 굴파리좀벌 등 25종
- 자재원료(친환경농가에 한함) :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
- 토양검정(일반농가)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지원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1. 1 ~ 12. 31.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양검정결과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# 2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 생력화 사업

❖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
❖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청정 농업환경 유지·보전

#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4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34농가
❍ 사 업 비 : 166백만원(도비 100, 자부담 66)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대상
-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제주시 거주 농가
-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자(배우자 포함)

※ 선정 우선순위 : 유기인증 농가 > 무농약인증 농가

❍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
(미생물 배양기, 농업용 동력운반차, 과수 전정가위 등)

※ 단, 박스, 포장재 등 단순 소모성 자재는 제외

❍ 지원한도 : 농가당 품목 기준 1백만원 ~ 5백만원(보조한도 3백만원)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친환경인증서 사본,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 영수증, 견적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3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

❖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있어 청정제주 친환경 웰빙기능성 농산물을 생산·가공·유통처리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전문생산자조직체를 육성, 농가소득증대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4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개소

❍ 사 업 비 : 210백만원(도비 140, 자부담 70)

- 지원조건 : 보조 70%, 자부담 30%

❍ 지원대상

- 친환경·웰빙작물 생산·유통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,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도내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법인

❍ 지원내용

- 친환경·웰빙작물 원료보관 시설, 가공·유통 기계설비, 공동작업장 등 가공식품 생산·개발 및 유통 시설장비 구축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농정과(원예특작팀)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법인등기부 등본(재무제표, 조합원 명부 첨부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(해당시) 사본, 사업참여자 명단(인증서 사본) 및 사업 동의서(회의록 첨부), 사업부지 확보내역(토지 등기부등본 등),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4 친환경·웰빙작물 생산·유통단지 조성사업

❖ 농약·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청정한 농업환경 유지·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육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4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개소

❍ 사 업 비 : 340백만원(도비 238, 자부담 102)

- 지원조건 : 보조 70%, 자부담 30%

❍ 지원대상 : 친환경농업규모 5ha이상, 사업익년까지 친환경신규인증 3ha이상 가능한 조직체, 지역에서 생산되는 웰빙기능성 작물 5ha이상인 조직체로서 사업익년까지 친환경 또는 GAP인증 3ha이상 신규인증이 가능한 조직체

* 웰빙작물 : 자황벼, 흑미, 검은깨, 흑대두, 기장, 차조, 수수, 메밀, 보리, 특약용작물

❍ 지원내용 :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·장비, 친환경 농·축산물 생산시설·장비,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설·장비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농정과(원예특작팀)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법인등기부 등본(재무제표, 조합원명부 첨부), 사업참여자 명단(인증서 사본 및 자조금 납부영수증) 및 사업동의서(회의록 첨부), 사업부지 확보내역(토지등기부등본 등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

❖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·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의 보전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비료관리법 제7조,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43,200톤

❍ 사 업 비 : 3,982백만원(자체재원 3,982)

❍ 지원대상 :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

❍ 지원내용 : 유기질비료(3종) 및 부숙유기질비료(2종) 지원

❍ 지원단가

- 유기질비료 1,700원 (보전금 1,000원 + 도비 700원)
  퇴비 1,300~1,600원 (보전금 700~1,000원 + 도비 600원)

※ 친환경인증 농가는 퇴비 구매 시 도비 300원 추가지원(도내산 비료 도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)

| 구 분 | 특등급 | 1등급 | 2등급 |
|---|---|---|---|
| 유기질비료(원/20kg) | 1,700 (2,000) | | |
| 퇴비·가축분퇴비(원/20kg) | 1,600 (1,900) | 1,500 (1,800) | 1,300 (1,600) |

* ( ) 는 도내산 비료 구입 시 지원단가(도비 300원 추가지원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4. 11. 11. ~ 12. 10. (신청마감)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6 토양개량제 지원사업

❖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(석회질, 규산질)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·보전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지법 제21조,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2,710톤

❍ 사 업 비 : 650백만원(국비 455, 도비 195)

❍ 지원대상 : 제주시 소재 농지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함)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 농가

❍ 공급지역(3년 1주기) : ('25년) 구좌읍

❍ 지원내용 : 규산질·석회질·패화석비료 전액 무상 지원(국비 70%, 도비 30%)

❍ 지원기준 : 농업기술센터가 산정한 법정리·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2. 1. 28. ~ 4. 20. (신청마감)

※ 3년 1주기 공급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7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

❖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통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난 경감과 비료 적기 살포 등 사업효과 거양

## ▢ 지원근거

❍ 농지법 제21조,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2,700톤

❍ 사 업 비 : 162백만원(국비 81, 도비 81)

❍ 지원대상 :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선정농가 중 희망농가('25년 공급지역)

❍ 공급지역(3년 1주기) : ('25년) 구좌읍

❍ 지원내용 :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

❍ 지원기준 :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선정농가 중 희망농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공동살포 희망농가 대상자 선정(지역농협별) : 2025. 2월

❍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시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# 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) 지원사업

❖ 자동·원격제어를 통한 온·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지원을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

#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개소
❍ 사 업 비 : 120백만원(기금 30, 도비 36, 융자 30, 자부담 24)
❍ 지원대상 : 고정식 시설(온실, 수직농장)에서 채소·화훼·특용작물(육묘장 포함)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등
❍ 지원단가 : 사업집행 시 실단가 적용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 시 활용
- 200백만원 한도(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)
- 지원조건 : 기금 25%, 도비 30%, 융자 25%, 자부담 20%
❍ 지원내용 : 시설원예 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
- (센서장비) 외부 온도·풍속·감우·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, CO2, 토양수분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
- (영상장비)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- (제어장비) 환풍기, 차광·보온커튼, 광량, CO2,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
- (정보시스템) 온실 내 센싱, 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시스템 등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수요조사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3. 8. (신청마감)
-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자 선정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❍ 2026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
- (상반기) 2025. 3월 / (하반기) 2025. 7월 ~ 8월경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9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원예현대화) 지원사업

❖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향상

## □ 지원근거

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개소

❍ 사 업 비 : 242백만원(기금 60, 도비 73, 융자 60, 자부담 49)

- 지원조건 : 기금 25%, 도비 30%, 융자 25%, 자부담 20%

❍ 지원대상 : 고정식 시설(온실, 수직농장)에서 채소·화훼류(육묘장 포함)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

❍ 지원단가 : 사업집행 시 실단가 적용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 시 활용

❍ 지원내용 : 양액재배시설, 자동개폐기, 환풍기, 무인방제기, 보광시설 등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수요조사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3. 8. (신청마감)

-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자 선정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❍ 2026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

- (상반기) 2025. 3월 / (하반기) 2025. 7월 ~ 8월경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0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에너지절감시설) 지원사업

❖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·보온시설 설치 지원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개소

❍ 사 업 비 : 61백만원(기금 15, 도비 19, 융자 15, 자부담 12)

❍ 지원대상 : 고정식 시설(온실, 수직농장)에서 채소·화훼·버섯류(특용작물 포함)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

❍ 지원단가 : 다겹보온커튼(수평권취식) ㎡당 13천원 등(사업집행 시 실단가 적용)

- 지원조건 : 기금 25%, 도비 30%, 융자 25%, 자부담 20%

❍ 지원내용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수요조사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3. 8. (신청마감)

-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자 선정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❍ 2026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

- (상반기) 2025. 3월 / (하반기) 2025. 7월 ~ 8월경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(신재생에너지시설)

❖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개소

❍ 사 업 비 : 113백만원(국비 45, 도비 34, 융자 23, 자부담 11)

❍ 지원대상 :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(온실, 버섯재배사, 수직농장)에서 채소·과수·화훼·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

❍ 지원단가

- (공기 대 공기) 617천원/kw, (공기 대 물) 865천원/kw
- (지열 수직밀폐형) 1,638천원/kw, (지열 수평밀폐형) 1,260천원/kw

※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결과 반영하여 난방부하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 결정

❍ 지원조건 : (공기열) 국비 40%, 도비 30%, 융자 20%, 자부담 10%
(지 열) 국비 60%, 도비 20%, 융자 10%, 자부담 10%

❍ 지원내용 : 고정식 재배시설에 신재생에너지시설(공기열, 지열) 지원

※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사업추진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수요조사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3. 8. (신청마감)

-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자 선정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❍ 2026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

- (상반기) 2025. 3월 / (하반기) 2025. 7월 ~ 8월경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2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

❖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新소득원으로 발굴하여 농업경쟁력 강화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비 : 5,000백만원(도비 3,000, 자부담 2,000)
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대상 :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

❍ 육성(지원)품목 : 채소류, 화훼류, 특용작물 등 밭작물 및 기타 과수류

※ 감귤 및 FTA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품목(키위 등) 제외

- FTA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품목 제외

❍ 지원내용 : 비닐하우스시설(부대시설 포함), 물탱크 및 생산·유통장비 지원

- 신규단지 지원 원칙,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시설 지원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농정과(원예특작팀)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참여 농가 현황 및 동의서, 견적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3 친환경비료(폐광어 발효액비 등) 지원사업

❖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❖ 농림 축·수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5,000통
❍ 사 업 비 : 600백만원(도비 360, 자부담 240)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※ 전체 신청량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비율 조정될 수 있음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정보(필지)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❍ 대상자 우선순위 : 유기 인증 > 무농약 인증 > 일반농업
- 필지별 사업량(대상자)확정
-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필지(동일품목) 중복 지원불가

❍ 지원단가(㎡당) : 유기인증 200원, 무농약 150원, 일반 75원
❍ 지원내용 : 발효액비(유기농업자재) 등
-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2월경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4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

❖ 마늘재배 포장의 병해충을 방제하고 연작장해를 막아 건전한 토양을 조성하여 마늘의 품질향상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7ha

❍ 사 업 비 : 67백만원(도비 40, 자부담 27)
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정보(필지)를 등록한 구마늘 재배 농가

❍ 지원단가 : 1,000㎡당 408천원 범위 내(도비 244, 자부담 164)

- 사업 신청기준 : 1,000㎡당 토양 소독제 6포(30kg) 신청

※ 165㎡당 약 1포(5kg)/68,000원 소요

❍ 지원내용 : 마늘토양소독제 약제 구입비 지원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5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

❖ 관행 농업에 이용되는 합성수지 멀칭 비닐 사용 감축으로 영농폐기물 발생 감소와 폐비닐 수거·처리 비용 절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139ha

❍ 사 업 비 : 334백만원(도비 200, 자부담 134)
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채소작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

❍ 지원기준 : 농가당 최대 2ha 지원(최대 5,200천원)

❍ 지원내용 :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구입비용 지원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6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

❖ GAP 인증 농가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확대 도모

❖ GA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감소 및 인증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 공급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, 제110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512건

❍ 사 업 비 : 128백만원(국비 64, 도비 64)
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도비 50%

❍ 지원자격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
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,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

❍ 지원한도 :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

❍ 지원내용 : 농산물의 잔류농약·중금속, 토양, 용수 검사 수수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년 연중

❍ 신청장소 : 주민등록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GAP 인증서 사본, 검사(분석)비 영수증(사본), 검사(분석) 증명서(사본)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7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

❖ GAP 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증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안심먹거리 인증 농산물(GAP) 생산기지 구축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비 : 1,833백만원(자체재원 1,100, 자부담 733)
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❍ 사 업 량 : 약 300농가

- (저온저장고) 16.5㎡ 이하 / 30농가 *보조금 10,385천원 한도
- (시설·장비) 농약보관함·농기계·선별기 등 / 270농가 *보조금 3,000천원 한도

❍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GAP인증이 유효한 농업인

❍ 지원내용 : GAP 인증 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(설치) 비용 지원

※ 지원내용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
❍ 신청장소 : 주민등록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GAP인증서 사본, 견적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8 채소·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

❖ 시설채소·화훼 생산시설의 단지화를 통한 다양한 신선농산물의 연중 생산 공급
❖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제고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·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
❍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## ▢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8개소
❍ 사 업 비 : 871백만원(도비 610, 자부담 261)
❍ 지원대상 : 밭작물(채소·화훼·특용·식량작물) 재배하는 농가(과수제외)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- (2그룹) 일반농가
❍ 지원내용 : 채소·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및 빗물처리시설 지원
❍ 지원기준 : 지원기준량(농가당) 1,000㎡ ~ 1,650㎡ 범위 내

| 구 분 | | | 농가당 사업비 | 보조한도 | 보조율(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하우스 시설 | 1그룹 | | 82,500천원 이내 | 57,750천원 이내 | 70 |
| | 2그룹 | | 82,500천원 이내 | 49,500천원 이내 | 60 |
| 물탱크 시설 | 1그룹 | 50톤 | 28,600천원 이내 | 20,020천원 이내 | 70 |
| | | 100톤 | 41,200천원 이내 | 28,840천원 이내 | |
| | 2그룹 | 50톤 | 28,600천원 이내 | 17,160천원 이내 | 60 |
| | | 100톤 | 41,200천원 이내 | 24,720천원 이내 | |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1. 2. ~ 1. 17.
❍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

❖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❍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제6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사 업 량 : 임산부 1,300명 지원

❍ 사 업 비 : 499백만원(도비 499)

- 지원조건 : 보조율 80%

※ 사업대상자 선정 후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주문금액의 20% 자부담 발생

❍ 지원자격 :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중이거나 '24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

❍ 지원내용 :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친환경(유기·무농약)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(1인당 384천원 지원)

❍ 공급방식 : 임산부는 공급업체 인터넷몰을 이용하여 상품 주문 후 결제(주문금액의 20%),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 제작하여 신청 주소지로 직배송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신청기간 : 2025. 2월

❍ 신청장소 : 주민등록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(☎ 728-3351~4) |
|---|---|

# [ 유통분야 ]

## 1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

❖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와 영농 기계화 기반 마련으로 농경지 활용도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등 농업 환경 개선

#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❍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#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179개소
❍ 사 업 비 : 1,250백만원(도비 750, 자부담 500)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- (2그룹) 일반농가

❍ 지원내용 : 200㎥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
❍ 지원기준 : 7,000천원 / 개소당(보조한도 4,200천원, 보조율 60%) *㎥당 35천원
※ 지원단가는 2024년 사업계획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

#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 · 통보(시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월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. 2 ~ 1. 17.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 · 면 · 동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가점증빙서류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2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

❖ 농촌지역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가에 소규모 농작업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 안정화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❍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214대
❍ 사 업 비 : 2,143백만원(도비 1,500, 자부담 634),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- (2그룹) 일반농가

❍ 지원기종 : 경운기, 관리기, 비료 살포기 등 1천만원 이하 농기계
❍ 지원내용 :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(농가당 1기종 1대)
*(농기계 1대 최소 사업비 500천원)
❍ 지원기준 : 사업비 10,000천원 이내 그룹별 60~70% 보조금 지원

| 구 분 | 농가당 사업비 | 보조금 지원한도 | 적용 보조율(%) |
|---|---|---|---|
| 1그룹 | 10,000천원 이내 | 7,000천원 이내 | 70 |
| 2그룹 | 10,000천원 이내 | 6,000천원 이내 | 60 |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 : 2025. 1월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 : 2025. 1. 2 ~ 1. 17.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가점증빙서류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3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

❖ 자가 육묘 기반 확충으로 영농비 절감 및 영농환경 유연성 확보
❖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적정 재배 시기 조절을 통한 영농환경의 유연성 확보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❍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15개소
❍ 사 업 비 : 215백만원(도비 150, 자부담 65)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가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- (2그룹) 일반농가

❍ 지원내용 : 165㎡ 이하 농가 보급형 육묘장 시설비 지원
- 기초공사, 골조공사, 피복공사, 개폐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

❍ 지원기준 : 사업비 13,860천원/165㎡(보조한도 9,702천원), *㎡당 84천원

| 구 분 | 농가당 사업비 | 보조금 지원한도 | 적용 보조율(%) |
|---|---|---|---|
| 1그룹 | 13,860천원 이내 | 9,702천원 이내 | 70 |
| 2그룹 | 13,860천원 이내 | 8,316천원 이내 | 60 |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 · 통보(시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월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. 2 ~ 1. 17.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가점증빙서류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4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

❖ 채소 등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출하 시기 조절로 수급 안정 및 소득 안정화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❍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20개소
❍ 사 업 비 : 358백만원(도비 250, 자부담 108)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- (2그룹) 일반농가

❍ 지원내용 : 16.5㎡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또는 장비
❍ 지원기준 : 사업비 17,325천원/16.5㎡(보조한도 12,127천원), *㎡당 (시설)1,050천원, (장비)800천원

| 구 분 | | 농가당 사업비 | 보조금 지원한도 | 적용 보조율(%) |
|---|---|---|---|---|
| 1그룹 | 시 설 | 17,325천원 이내 | 12,127천원 이내 | 70 |
| | 장 비 | 13,200천원 이내 | 9,240천원 이내 | 70 |
| 2그룹 | 시 설 | 17,325천원 이내 | 10,395천원 이내 | 60 |
| | 장 비 | 13,200천원 이내 | 7,920천원 이내 | 60 |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 · 통보(시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월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. 2 ~ 1. 17.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가점증빙서류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5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

❖ 농경지에 대한 관수시설 지원으로 관수작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적기 수분공급을 통한 농작물 상품성 향상 및 가뭄피해 최소화로 농업생산 안정화 도모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❍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27ha
❍ 사 업 비 : 100백만원(도비 70, 자부담 30)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- (2그룹) 일반농가

❍ 지원내용 : 밭작물 관수시설(스프링클러, 분사호수) 자재 구입비(설치비 제외)
- 농가당 0.1ha(1,000㎡) 이상 ~ 1ha(10,000㎡)이하 지원

❍ 지원기준 : 사업비 3,750천원/1ha(보조한도 2,625천원), *0.1ha당 375천원

| 구 분 | 농가당 사업비 | 보조금 지원한도 | 적용 보조율(%) |
|---|---|---|---|
| 1그룹 | 3,750천원 이내 | 2,625천원 이내 | 70 |
| 2그룹 | 3,750천원 이내 | 2,250천원 이내 | 60 |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 · 통보(시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월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. 2 ~ 1. 17.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가점증빙서류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6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

❖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비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농가 영농비용 감소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3,700ha

❍ 사 업 비 : 334백만원(도비 200, 자부담 134)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(농협별 농가 신청)
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제주시 소재 농지에 한해 지원

※ 농가가 직접 드론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일반 농약살포 대행한 경우는 지원 제외

❍ 지원내용 :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 대행비 일부 지원

❍ 지원기준

- 지원단가 : 90천원/ha(자체재원 54, 자부담 36) ※ 보조율 60%(3.3㎡당 18원 예정)

※ 일부 농협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 방제비 지원(농협별로 상이, 일반적 평당 20원 내외)

3.3㎡당 방제비(50원) 중 농협 지원액(20원) 차감 ⇒ 30원의 60%(18원) 지원 예정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 및 지역농협) : 2025. 1월

❍ 사업 신청·접수(지역농협 → 농정과) : 2025. 1월 ~ 2월 예정

-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팀
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실적증빙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7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

❖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 채소의 가격 불안정 해소 및 감자재배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우량종서 보급 확대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43톤

❍ 사 업 비 : 334백만원(도비 200, 자부담 134)

❍ 지원대상 : 감자 종서(채종포용)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

❍ 지원내용 :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

❍ 지원기준 : 46천원/20kg(보조 27.6, 자부담 18.4) ※ 지원한도 : 2톤 이내/ha

※ 지원단가는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 : 2025. 1월
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 : 2025. 1. 2 ~ 1. 17.
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
❍ 사업 추진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: 2025. 1월 ~ 2월

❍ 지원 대상자 및 농가별 사업량 확정 : 2025. 2월

❍ 사업 추진 및 정산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8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

❖ 채소류 등 산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생산자 조직 단체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

## ▢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

## ▢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900천매

❍ 사 업 비 : 900백만원(도비 450, 자부담 450)

❍ 지원대상 : 제주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유통조직
영농법인, 농협 및 품목별 생산·유통 조직(공선회 등)에 가입한 농업인
*사업 수행기관 : 지역농협, 영농법인
※ 영농법인 지원요건: 구성원 농업인 5인 이상, 출자금 1억원 이상, 운영실적 1년 이상

❍ 지원내용 : 제주산 신선 농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기준 : 포장재비 구매(제조) 단가의 50% 보조 지원
- 지원 자재 : 포장규격 20㎏이하의 골판지, 플라스틱 상자

## ▢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 : 2025. 1월

❍ 사업 신청·접수(생산자단체 등 → 농정과) : 2025. 1. 2 ~ 1. 17.
-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팀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출하계획서, 견적서, 3년간 출하실적 증명서(공선회 지원시 공선회 출하 실적 포함), 단체소개서, 법인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5인이상)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
❍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: 2025. 2월

❍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9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

❖ 채소 등 농산물 주산지에 집하·선별·저장 등에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0개소(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)

❍ 사 업 비 : 834백만원(도비 500, 자부담 334)

❍ 지원대상 :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), 생산자단체(지역농협)

❍ 지원기준 : 개소당 보조금 50~150백만원 이내, 보조율 60%

❍ 지원내용 :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(구입)비 지원

- 시설 : 집하장, 저온저장고, 선별시설, 건조시설 등
- 장비 : 지게차, 파렛트 등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 : 2025. 1월
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→ 농정과) : 2025. 1. 2 ~ 1. 17.

- 신청장소 :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팀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(2개이상), 구성원 현황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법인재무재표, 이사회 회의록, 등기부등본(토지,건축), 단체소개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납세증명서 등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10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

❖ 규모화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

## □ 지원근거

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## □ 사업내용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70대

❍ 사 업 비 : 1,230백만원(도비 740, 자부담 490)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5,000㎡ 이상 재배 농업인

❍ 지원기준 : 농가당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중형농기계 1대

* 트랙터 및 드론의 경우 단가 등을 고려 사업비 40백만원까지 허용(단, 보조금은 18백만원 제한)

❍ 지원내용 : 중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※ 보조율 60%

- 지원기종 : 정식기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곡물건조기, 보리짚제초기, 드론, 농업용 소형트랙터
- 지원제외 : 농산물 유통·가공 장비(저온저장고, 선별기, 지게차, 등) 및 과수 관련 장비 등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❍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 : 2025. 1월

❍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 · 면 · 동) : 2025. 1. 2 ~ 1. 17.
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 · 면 · 동사무소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확인서류, 지방세납세증명서, 가점증빙서류 등
  * (드론 조종자격 소지자) 자격증 사본

❍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5. 2월

❍ 사업 추진 : 2025. 3월 ~ 12월

| 문의 |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(☎ 728-3341~4) |
|---|---|

#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

#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변경

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(728-3311)

**여성 농업인의 출산(예정)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❍ 사 업 량 : 5명 (제주시)
❍ 사 업 비 : 30백만원 (제주시)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90일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(예정)한 전업 여성농업인
❍ 지원내용 :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이용 금액의 전액 지원
- 지원일수 : 출산 전 90일, 출산 후 120일(총 210일) 기간 중 70일 범위 내
❍ 이용범위 :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함
❍ 지원기준
- 1일 지원액 : 80,240원
- 1인 최고 한도액 : 5,616,800원 ☞ 80,240원×70일(최대 이용일수)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지원 대상 확대**
-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(예정)인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
-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제외(단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,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)

❖ **지원 기준 변경**
- (기존)
  ·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 78,800원 80% 지원(63,040원) ※ 보조 80%
  · 출산 전 90일 ~ 출산 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
  · 출산 전 또는 후 여성농업인이 직접 신청
- (변경)
  ·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 80,240원 100% 지원 ※ 보조 100%
  · 출산 전 90일 ~ 출산 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지원
  · 출산 전 또는 후 여성농업인 또는 동일 농업경영체 구성원이 신청 가능

#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대상 확대

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(728-3311)

**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20,000명 (도전체)

❍ 사 업 비 : 4,000백만원 (도전체)

❍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(주민등록 필수)하면서 주소를 두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 시행연도(2025.1.1.) 기준 만 20세 이상~ 만 80세 미만인 자

〈제외대상〉

☞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(단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)

☞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
☞ 최근 2년 내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
☞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시 지급대상)

☞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

❍ 지원내용 : 1인당 200,000원 행복이용권(바우처) 지원

- 지급방식 : 농협직불카드 연계 포인트 자동 지급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지원 대상 확대**

- **(기존) 만 20세 ~ 75세미만인 자(출생일 기준 : 1950. 1. 1. ~ 2004. 12. 31. 출생자)**
- **(변경) 만 20세 ~ 80세미만인 자(출생일 기준 : 1945. 1. 1. ~ 2004. 12. 31. 출생자)**

# 농민수당 지원사업 대상 확대

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(728-3311)

**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45,000명 (도전체)

❍ 사 업 비 : 18,000백만원 (도전체)

❍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이상 계속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, 2년이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전업 농민

〈제외대상〉

☞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(단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,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)

☞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
☞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
☞ 최근 2년 내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
☞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시 지급대상)

❍ 지원내용 : 1인당 400,000원 농민수당(탐나는전) 지원

- 지급방식 : 탐나는전카드 연계 포인트 자동 지급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지원 대상 확대**

- **(기존)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(단, 영농조합법인 및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)**
- **(변경)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(단, 영농조합법인 및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,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)**

#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 추진

**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장 (728-3321)**

**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,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구축을 위한 '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' 을 신규 추진합니다.**

## Ⅰ 사업개요

- 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- ❍ 사업규모 : 1,312가구 내외
- ❍ 사 업 비 : 1,060백만 원(국비 530, 도비 530)
- ❍ 지원대상 :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아동 포함 가구
- ❍ 지원내용 :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'농식품 바우처'를 월 단위로 지원
- ❍ 지급방식 : 전자바우처(카드방식) 및 온라인 주문 등
- ❍ 지원품목 :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 등
- ❍ 사 용 처 : 농협하나로마트, GS25, CU, 농협몰[온라인]등 가맹점
- ❍ 지원금액 : 월 4만 원 / 1인 가구, 월 10만 원 / 4인 가구

※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

| 구분(가구)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9인 | 10인↑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금액(천원) | 40 | 65 | 83 | 100 | 116 | 131 | 145 | 159 | 173 | 187 |

## Ⅱ 시 행 일 : 2025. 2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 추진**

- **(지원대상)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· 영유아 · 아동 포함 가구**
- **(지원내용)** 가맹점에서 **신선 농산물**(국산 과일, 채소, 우유, 알류, 육류, 잡곡류 등)을 구입할 수 있는 **바우처 카드(전자 바우처) 지급**
- **(지원금액)**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차등 지원

※ 매월 지원 금액 충전 (월 4만 원 / 1인 가구 ~ 월 18만 7천 원 / 10인 가구 이상)

#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면적직불금 단가 상향

**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장 (728-3321)**

**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2월 ~ 12월 ※이행점검기간 : 전년 10.1~금년 9.30.

❍ 사업규모 : 13,608ha

❍ 사 업 비 : 25,850백만원(국비 100%)

❍ 지원대상 :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❍ 지원내용 : 지급대상농지 실경작자에게 경작면적별 면적직불금 또는 소농 직불금 지급

❍ 지원단가

- <소농직불금> 농가당 130만원 지급
- <면적직불금> 비진흥 밭단가 136~150만원/ha

*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확정시 변동 있을 수 있음

## Ⅱ 시 행 일 : 2025. 2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 지원 단가 상향**

- **(기존) 비진흥 밭단가 100~134만원/ha**
- **(변경) 비진흥 밭단가 136~150만원/ha**

**※ 지급단가 5% 수준 인상, 비진흥 밭 단가는 비진흥 논의 80%수준으로 상향(현행 62~70%)**

*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확정시 변동 있을 수 있음

#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율, 지급상한 확대

**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팀장 (728-3321)**

**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, 토양생태·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3월 ~ 12월

※사업기간(친환경인증 유지기간) : 전년 11.1~금년 10.31.

❍ 사업규모 : 386ha

❍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국비 100%)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

❍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

❍ 지원기준

- 지급기한 : 유기 5년(무농약 3+유기2), 무농약3년/ 유기지속
- 지급상한 : 농가당 최소 0.1ha 이상 최고 30ha 이하

※시행령 개정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

## Ⅱ 시 행 일 : 2025. 3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인증 6년차 이상에 지급하는 유기지속 직불 지원율 상향**

- **(기존) 유기단가의 50% → (변경) 유기단가의 60%**

❖ **농가당 지급상한 확대**

- **(기존) 5ha → (변경) 30ha**

*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확정시 변동 있을 수 있음

#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변경

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(728-3351)

**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지역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으로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화 대비 밭농업 경쟁력 강화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비 : 5,000백만원(도비 3,000, 자부담 2,000)

※ 사업 신청 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조정될 수 있음

❍ 지원대상 : 정예소득작목단지 신규조성 또는 기 조성단지에 보완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

* 신규단지 조성 지원이 원칙

❍ 육성(지원)품목 : 채소류, 화훼류, 특용작물 등 밭작물 및 기타 과수류

※ 감귤 및 FTA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품목(키위 등) 제외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개정**

- **(작물 사후관리) 준공일로부터 5년**

☞ 단, 제반 여건에 따라 신청작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제주시 변경승인을 득해야 함

- **(신청지목) '임야'인 경우**

· 『농지법시행령』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야는 신청 가능

※ 단, 2016.1.12. 이전에 취득한 농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
☞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

- **(사업 대상지) 읍·면을 달리하는 경우**

· 사업대상지는 사업대상 단체가 소재한 읍·면·동지역 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·면·동을 달리하는 경우도 경계가 인접한 경우(법정리 기준)는 신청 가능

※ (가능 예시) 한림 금악리, 한경 저지리 / 회천동, 조천 와흘리 등

#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지원제한 기준변경

**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**

**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 기능 강화로 농산물 유통 체계화의 거점으로 육성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량 : 10개소(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)

❍ 사 업 비 : 834백만원(도비 500, 자부담 334)

❍ 지원대상 :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), 생산자단체(지역농협)

- 지원기준 : 개소당 보조금 50~150백만원 이내, 보조율 60%
- 지원내용 :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(구입)비 지원
  - ·시설 : 집하장, 저온저장고, 선별시설, 건조시설 등
  - ·장비 : 지게차, 파렛트 등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지원제한 기준변경**

- **(기존)** 최근 3년이내 동일 지원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
- **(변경)** **① 최근 2년이내 동일 지원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**
  **② 2025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**
  **③ 최근 3년간(`22~`24년) 아래 조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,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, 체납하고 있는 법인**

·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, 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, 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

#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침 변경

**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**

**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, 고령농, 여성농 및 농가 고령화 대응 청년창업농·후계농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 업 비 : 3,330백만원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

- 1그룹 :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・후계농
- 2그룹 : 일반농가

❍ 지원사업 : ①농경지암반제거 지원사업 ②소형농기계 지원사업 ③소규모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④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⑤ 소규모 채소・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⑥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*2개 이상 사업 중복 수행 불가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❖ **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변경**

-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
  **단, 동일 농업경영체일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(신설)**
  ※ 단, 친환경, **GAP 인증농가인 경우인증서로 대체 가능 (신설)**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,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한 교원(교수포함) 및 직원, 국가(대사관 등 포함)·지방공사·공단 및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재직자, 농(축)·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·단체에 근무할 경우 지원 제외
  ※ 단, 친환경, **GAP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(신설)**

❖ **사업별 세부 지원 기준 추가**

-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지원기준량(농가당) : 1기종 1대 **(농기계 1대 최소 사업비 500천원)**

❖ **채소·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빗물이용시설 지원단가 상향**

| 그룹 | 구분 | 변경전 | | | 변경후 | | | 지원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총사업비 | 보조 | 자부담 | 총사업비 | 보조 | 자부담 | |
| 1그룹 | 50톤 | 21,142 | 14,800 | 6,342 | **28,600** | **20,020** | **8,580** | 70% |
| | 100톤 | 31,626 | 22,138 | 9,488 | **41,200** | **28,840** | **12,360** | |
| 2그룹 | 50톤 | 21,142 | 12,685 | 8,457 | **28,600** | **17,160** | **11,440** | 60% |
| | 100톤 | 31,626 | 18,976 | 12,650 | **41,200** | **24,720** | **16,480** | |

❖ **가점 상향에 따른 심사평가표 변경**

- **(변경)**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가점 부여
  **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** (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): **기존(5점) → 변경(8점)**
- **(신설) 우량농지 활용 여부(암반제거 지원사업): 3점**
- **(신설) 밭작물 자조금 납부 농가(암반제거 지원사업, 관수시설 지원사업): 3점**
  ***당근, 월동무, 양배추, 브로콜리, 마늘, 양파 자조금 가입자**

#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변경

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

**규모화 된 밭작물 재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농작업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**

## Ⅰ 사업개요

❍ 추진기간 : 2025. 1월 ~ 12월

❍ 사업량 및 사업비 : 70대 · 1,230백만원(도비 740, 자부담 490)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기준 밭작물 5,000$m^2$ 재배 농업인

❍ 지원기준 : 농가당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중형농기계 1대

* 농업용 트랙터 및 드론의 경우 단가 등을 고려 사업비 40백만원까지 허용(단, 보조금은 18백만원 제한)

❍ 지원내용 : 중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※ 보조율 60%

- 지원기종 : 정식기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곡물건조기, 보리짚제초기, 드론, 농업용 소형트랙터

## Ⅱ 시 행 일 : 2025. 1월

###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**❖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개정**

**심사평가표 가점 변경**

- **(변경)**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가점 부여

**GAP 인증 농가인 경우 (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): 기존(5점) → 변경(10점)**

Jeju 제주특별자치도

고향사랑e음
접속, '제주' 선택

기부로 제주 숲과 바다를 더 맑게!

# 나♥도 제주도!
# 기부도 제주도

**제주사랑 기부 캠페인**

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드립니다

(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, 10만원 초과 시 16.5% 세액 공제)

LOVING JEJU
GIVING BACK